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검토 요청 근거 마련 등〉

■ 백종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007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검토 요청 근거 마련 등	3
※ 참고자료	10
1. 상수원관리규칙(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10
2.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주민지원사업 관련) ...	14
3.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제도 및 규제내용	16
4.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현황	18
5.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	19

I. 제안경위

2024년 5월 30일 백중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변경이나 해제가 어렵고 그 일대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며 해당 지자체의 개발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되어 불만이 큰 상황임.

이에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중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주민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도록 하고, 개발 사업에 지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요청 근거 마련 등

개정안은 ①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중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환경부장관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7조제2항),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주민의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요청)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내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변경 요건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7조제3항),

③ 환경부장관은 지자체,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지자체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안 제7조제4항),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절차 마련(안 제7조제5항) 등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관련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④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요청을 수용하기 어려워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에 지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생략)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설>	② 환경부장관은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중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상수원보호구역이 제2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환경부장관에게 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주민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④ 제3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관련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수도사업자 또는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관련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u>지정하거나 변경하면</u>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u>지정 절차</u>, 허가의 <u>기준에</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주민지원사업) ①·② (생략) <u><신설></u> ③ (생략)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⑥ ----- -----<u>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u>----- -----. ⑦ ~ ⑨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⑩ -----<u>제9항까지에</u>----- -----<u>지정·변경절차</u>-----<u>기준 등에</u>----- -----. 제9조(주민지원사업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요청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사업 실시에 지장이 크다고 판단하면 국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83조(벌칙) -----

현행	개정안
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1의2. ~ 11. (생략) 제87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 9. (생략) ⑤ (생략)	----- ----- -----. 1. 제7조제7항-----제8항에----- ----- ----- 1의2. ~ 11. (현행과 같음) 제87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제7조제8항----- ----- 2. ~ 9.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7조¹⁾에서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²⁾, 동법 시행령에³⁾ 따라 시장·

1)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2) 상수원보호구역은 ‘22년 기준 268개소(대청호 2개소로 산정)로, 1,121km²이 지정되어 있음.

3)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변경·공고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수도법 시행령」 제6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군수·구청장이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이를 지정 및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신청 및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인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⁴⁾.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이 필요할 때 시·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의 지정·변경을 신청하고,

보호구역이 같은 시·도의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고 수도사업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시·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인⁵⁾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일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관리 협의가 미성립된 경우 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거나(협회의 당사자가 다른 시·도에 속하는 경우 등), 시·도지사(협회의 당사자가 각각 같은 시·도에 속하는 경우)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변경 여부를 결정함⁶⁾.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및 공고

4) 「수도법 시행령」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③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공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그 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역 토지의 지적(地籍)을 고시하고,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공고 및 지적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5) 수도사업자는 일반수도사업자와 공업용수도사업자를 의미함. 일반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하고, 공업용수도사업자란 동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함. 수도사업자는 지자체장(160개)과 한국수자원공사로 구성됨.

6) 상수원관리규칙 조항은 참고자료 1 참조.

한편, 현행법 제7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상수원의 오염원을 방지하기 위해 수질오염물질 등을 사용하거나 투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신축, 토지의 굴착 등을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할 수 없도록 하는 등⁷⁾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음⁸⁾.

그런데 특정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인근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인근 개발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에만 있으므로, 인근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주민들의 요구(주민의 3분의 2이상)가 있는 경우 등

7)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각 목은 생략)

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

2.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은 참고자료 2 참조.

8) 다만, 「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의 일정 지역의 경우,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일부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제도가 있음.

에는 지자체가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환경부장관이 보호구역의 변경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하며, 변경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 관할 지자체의 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주민 동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호구역 변경을 요청하고 환경부장관이 이를 검토 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신축·증축, 토지의 굴착·형질변경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인근 지역의 개발이 촉진될 수 있고, 변경이 곤란한 경우에도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의 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⁹⁾이 이루어진다면 관할 시·도지사가 환경부령(참고자료1, 「상수원관리규칙」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고, 현행 법령 체계를 고려할 때 지자체의 상수원

9) 환경부는 주민의 동의만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의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보호구역 변경 시 취수 시설의 폐지 등에 따른 대체 수자원의 확보방안과 수질보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주민의 동의만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고,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의 변경은 해당 상수원의 수질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보호구역을 취수원으로 하는 하류 지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호구역의 변경은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상·하류 지자체 간의 합의가 있을 시에만 조정이 가능하며, 현재도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보호구역의 변경 전 상·하류 지자체 간 합의에 따라 보호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보호구역 변경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이 아닌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현행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참고자료2·5)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에게 상수원 수질보전 정책에 동참을 유도하고, 행위허가 기준에 합당한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요청이 수용되지 못한 사유로 국고지원¹⁰⁾을 하는 것은 동 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감안한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서울특별시 및 전라남도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상 손실보상 규정¹¹⁾이 마련되어 있고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중복지원 가능성이 있으며,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의 요건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신청이 가능하게 될 경우 전국 상수원 보호구역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우려가 있는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10)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적 지원 등의 대상이 되는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의미 또는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고, 지원 규정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실효성도 크지 않을 수 있음.

11) 수질개선, 주민지원사업 등에 사용되는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상황임.

문 의 처
02)6788-5533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취수지점, 보호구역의 범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5천 분의 1 이상 2만 5천 분의 1 이하의 지형도
 2.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서(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를 말하며, 보호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서 1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구역의 주요시설물 현황과 위치도
 4. 그 구역의 지목별·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과 행정구역별 토지면적 조사서
 5. 그 구역의 오염부하량계산서
 6. 그 구역의 지질조사서(지하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검토의견서
- ② 수도사업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하 “보호필요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르면 수도사업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필요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필

요구역이 같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고 수도사업자인 시장·군수·구청장과 보호필요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시·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필요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수도사업자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를 설치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으면 수도사업자와 보호구역의 지정·관리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의를 한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보호구역이 같은 시·도의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쳐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5조에 따른 지정신청이 없어도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면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수도법 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시·도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⑤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보호구역의 지정·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보호구역지정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불성립 시의 결정) ① 제5조제4항이나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2회 이상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협이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의 결정은 제외한다.

1. 협의의 당사자가 각각 같은 시·도에 속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2. 협의의 당사자가 각각 다른 시·도에 속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거나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협의의 당사자의 일방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수도사업자인 경우로서 그 상대방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그 상대방이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제1항의 결정을 받으려는 협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이나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보호구역지정 추진 경위서
 3. 미협의 사유서
-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적고시 등) 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제11조제3항 또는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적(地籍)을 고시(告示)하려면 미리 지적도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지적이 명시된 축척 5천 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적이 영 제11조제2항 또는 제14조제6항에 따른 공고사항과 일치하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확인신청 등이 있으면 그 확인서에 그 토지가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구역의 변경) 보호구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수도시설 중 취수시설 및 정수시설이 폐쇄되어 보호구역을 변경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7호의 검토의견서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한강수계 중 다음 각 목의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 나.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水邊區域)”이라 한다}
 - 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6. “관리청”이란 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11조(주민지원사업)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 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2. 한강수계 안에서 주민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3.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3. 교육기자재(教育機資材) 공급 등 육영사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행위가 제한되어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
6. 주택개량에 사용되는 자금지원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간접 지원사업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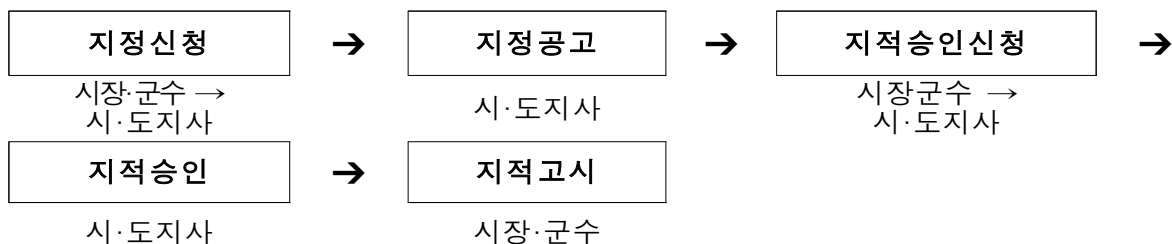
④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와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3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제도 및 규제내용

□ 상수원보호구역

- **(지정대상)**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수도법 제7조제1항, '61.12.31 도입)
- **(지정기준)** ① 하천수와 복류수 표준거리 $4\text{km} \pm 3\text{km}$ (수질상태, 개발잠재력, 취수량 등 고려), ② 지하수 200m, 강변여과수 2km를 표준거리로 하되, 수질과 지하심도 및 투수계수 및 등을 고려하여 지정, ③ 호소의 경우 만수위선으로부터 표준거리 $4\text{km} \pm 3\text{km}$ (수질상태, 개발잠재력, 취수량 등 고려)
- **(지정 절차)** 시장·군수·구청장 신청 → 시·도지사 지정(상수원관리규칙 제5조)



※ 임의조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 신청

- **(지정현황)** 전국 268개소, 면적 $1,121\text{km}^2$ (국토의 1.1%, '22.12월 기준)
- **(규제내용)** 금지, 허가 및 신고 행위로 구분
 - **(금지행위)** 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물 및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법 제7조 제3항)
 - 가축의 방목, 수영, 선박운항,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취사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세차행위 등 금지(시행령 제12조)
 - **(허가행위)**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대상(영 제13조)
 - 건축물,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및 용도변경
 - 임목 및 대나무 재배 또는 벌채, 토지 굴착·성토·형질변경 등
 - **(신고행위)** 시장·군수·구청장 신고대상(영 14조)
 -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제거 또는 원상복구 및 공장 등의 용도변경

□ **환경정비구역**(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기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으로서 하수도의 정비 등 환경정비계획이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
- **환경정비구역 지정 효과 : 행위제한의 완화**(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항목	상수원보호구역(제12조·제13조)	환경정비구역(제15조)
생활기반시설	○ 연면적 100㎡이하 주택 및 66㎡이하 부속건축물 신·증축 → 거주민 ○ 연면적 132㎡이하 주택 및 66㎡이하 부속건축물 신·증축 → 원거주민 ※ 지하층이 없는 경우 154㎡이하 신·증축	○ 연면적 200㎡이하 주택 및 66㎡이하 부속건축물 신·증축 → 거주민 ※ 혼인한 자녀가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 연면적 300㎡안에서 증축 ○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 일용품의 소매점 용도의 건축물 신·증축 200㎡이하
기타 건축물	○ 유치원, 경로당 ○ 종교집회장(300㎡이하 : 기도원 제외) ○ 새마을회관 ○ 정미소 및 방앗간(증축) ○ 효열비, 사당 등	○ 일반목욕장 신·증축 ○ 종교집회장 신·증축(기도원제외) ○ 이·미용원·탁구장·체육도장·기원·사무소·사진관·표구점·독서실·장 의사·당구장·마을공회당·창고 ⇒ 200㎡ 이하 신·증축 ○ 휴게음식점 증축 : 기존면적 포함 연면적 150㎡ 이내
용도 변경	○ 공장, 숙박, 일반음식점 → 오염발생 정도 낮은 용도로 변경 ○ 축사, 잠실 → 농산물보관창고 ○ 기존 주택을 연면적 50%이내에서 이·미용원, 약국, 정육점, 노유자 시설, 방앗간 등으로 변경	○ 기존공장·주택 → 일반목욕장(숙박겸업 제외)·종교집회장 ○ 기존공장·주택 → 이·미용원, 당구장 등 ○ 환경정비구역 총호수의 5~20%이내에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참고4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현황

(기준 : '22.12월)

지 역	지정개소	면적 (km ²)
계	268(대청호 2개소 산정)	1,121.37
서울	1	6.45
부산	1	88.50
대구	3	47.67
인천	-	0.00
광주	2	17.29
대전	1	77.71
울산	2	11.08
세종	-	0.00
경기	11	191.13
강원	46	95.14
충북	9	110.10
충남	6	5.54
전북	10	25.63
전남	60	185.35
경북	70	136.76
경남	35	121.20
제주	11	1.82

※ 여러 시·군·구에 걸쳐있는 상수원보호구역 1개소로 처리 (예) 팔당(남양주·광주·하남·양평) 경기도 1개소, 다만, 2개의 시·도에 걸쳐있는 대청호는 대전, 충북도 2개소로 산정

참고5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

□ 사업개요

- (근거) 「수도법」 제9조, 「한강수계법」 제11조, 「낙동강수계법」 제23조, 「금강수계법」 제21조, 「영산강수계법」 제21조
- (지원조건) **환특**상수원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 **기금**보호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해당지역(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 (지원내용)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행사제한 및 소득 불균형을 직·간접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등 지원

□ 지원현황

- (지원대상) 전국 보호구역 268개소 중 총 58개소 지원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보호구역 현황			지원액('24)	비고 (보조율)
	지정현황	지원가능 현황	지원현황		
계	268	233	58	27,119	
기금 지원	25	25	19	25,119	100%
환특 지원	243	208	39	2,000	30%

※ 수계기금 지원액은 일반지원비만 해당(특별지원비 제외)

- (지원절차) 시·도지사(시장·군수) → 환경부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마을주민회의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에 제출(지방환경관서 경유)

□ 연도별 지원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예산액)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26,358	27,115	26,978	27,009	27,119
기금 지원	한강	12,668	13,304	14,169	14,336	13,810
	낙동강	4,464	4,570	3,819	3,642	3,773
	금강	5,763	5,763	5,461	5,460	5,795
	영산강·섬진강	1,463	1,478	1,529	1,571	1,741
환특 지원		2,000	2,000	2,000	2,000	2,000